

(불 임 3)

판매론 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고 객 (인)

주 소 _____

인 감	
대 조	

판매론 약정서 사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	---

_____ (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 이라 한다)은 은행이 제공하는 B2B전자결제서비스의 판매론을 이용하여 고객이 거래기업(이하 ‘구매기업’ 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거래대금을 결제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론 약정(이하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약정은 고객이 은행의 B2B Xpress 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의 판매론을 이용하여 구매기업에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판매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은행이 판매대금 회수를 위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2. 판매기업: 은행과 판매론 약정을 체결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 구매기업: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은행이 제공하는 B2B전자결제서비스의 판매론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4. 약정한도: 은행이 약정기간동안 판매기업에게 공여할 수 있는 최대 신용한도
5. 거래한도: 은행이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기업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신용한도
6. 거치 결제: 구매기업이 판매론 이용대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7. 할부 결제: 구매기업이 판매론 이용대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할부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할부이자 는 원금 상환에 따른 잔여원금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8. 결제일 연장: 거래승인시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한 판매대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결제일을 연장하여 연장만기일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9. 거래승인: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인터넷, 전용선,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이에 대한 지급의무부담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할인: 만기일전에 판매기업이 만기일까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것을 말한다.
11. 만기일: 판매론 거래승인시, 해당 판매론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만약,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은 은행 익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12. 연장만기일: 제 8호에 의해 결제일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결제일을 말한다.
13. 거치/할부 만기일: 제 6,7호에 의해 거치/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약정 결제일을 말한다.
14. 할인이자: 판매기업이 만기일전에 판매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15. 승인수수료: B2B전자결제서비스의 판매론을 이용하는 대가로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6. 신용공여기간: 판매론 약정에 따라 은행이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만기일(연장만기일 포함) 또는 거치/할부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7. CD금리: 한국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특정잔존기간의 수익률표상 CD(91일물)의 전일 수익률을 의미한다.

제 3조 약정한도 및 거래조건

- ① 판매론의 약정한도 및 거래조건은 <별표> 판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고객은 B2B 전자결제서비스의 판매론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할 구매기업과 동 구매기업의 이용한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은행과 고객은 구매기업에 대한 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고객은 은행에 통보한 구매기업에 한하여 판매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론은 구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 구매에 따른 대금회수 용도로만 사용한다.

- ④ 고객은 은행이 제공하는 결제조건중 거치, 할부, 결제일연장 중 어느 하나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다. 고객이 결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이 해당내용을 은행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며 다만 이전에 등록된 거치/할부 결제 조건의 승인분은 기존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 4 조 이자율 및 수수료

- ① 고객이 만기일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할인이자를 부담하며, 구매기업이 거치나 할부 또는 결제일 연장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구매기업이 부담한다.
- ② 이 약정에 따라 고객이 만기일 전에 할인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용될 이자율은 할인일의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실제 적용금리는 <별표> 판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은행은 고객이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는 할인금액 입금일이나 만기일에 차감하고, 구매기업이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는 결제조건과 상관없이 만기일에 상환 받는 것으로 한다.
- ④ 거치나 할부의 경우에는 만기일의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실제 적용금리는 <별표> 판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거치/할부 이자 = 개별 판매론 이용대금잔액 × (만기일 CD 금리 + 거치/할부 가산금리) × 신용공여일수 ÷ 365
 (신용공여일수는 전월 대금결제일로부터 당월 대금결제일 전일까지의 일수)

제 5 조 거래승인

- ① 고객은 구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판매론을 이용하여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 내역을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에 승인요청한다. 다만, 고객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팩스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팩스에 의한 거래승인 요청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익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제1 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팩스를 통한 거래승인 요청건은, 은행에 신고된 고객 인감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여 거래승인을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동 승인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③ 은행은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금액이 제3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요청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제3조의 약정한도 및 거래조건에 따라 정상거래로 승인처리 한다. 고객은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기로 한다.

- ④ 고객은 판매론으로 승인된 거래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에 한해서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는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 즉, 이미 고객이 할인 신청하여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고객에게 입금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⑤ 만기일은 거래승인일로부터 최장 6개월로 하며 고객이 거래승인을 요청할 시점에서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만기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객이 구매기업을 위해 거치나 할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고객이 거치나 할부결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거래승인 요청시점에서 개별거래 별로 지정하여 거래승인을 요청하기로 한다. 이 경우 거래승인 건별 만기일로부터 최장 12개월 범위 내에서 거치나 할부 결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6 조 거래승인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인을 재개할 수 있다.

- 1. 구매기업이 제10조 제1항에 따른 판매론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판매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3. 약정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 4. 승인요청일로부터 만기일을 6개월 초과하여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 5. 고객 또는 구매기업이 부도, 파산, 회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 등 신용상태가 악화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신용상태가 정상인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승인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6. 1년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7. 허위 가공거래 등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 8. 은행이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9.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10.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장애, 인터넷 망의 장애,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제 7 조 매출채권의 양도

- ① 이 약정에 의해 승인된 거래승인분에 있어서는 고객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야 하며 고객이 거래승인을 은행에 요청할 경우 이를 매출채권 양도행위로 간주하기로 한다. 또한 매출채권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은 이 약정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매출채권양도통지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8 조 할인금액의 입금

- ① 고객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에 할인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할인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팩스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팩스에 의한 고객의 할인승인 요청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익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한다.
- ③ 제 2 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팩스를 통한 할인 신청은 은행에 신고된 고객의 인감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 요청건으로 간주하여 할인신청을 처리하기로 한다.** 상기 할인신청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고객의 할인신청에 따른 할인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할인이자 = 할인금액×(할인일의 CD 금리+할인가산금리)×신용공여일수 ÷ 365
 (신용공여일수는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 ⑤ 할인신청에 대한 거래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은 할인금액에서 할인이자와 승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고객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만기일 전일까지 고객의 할인신청이 없는 경우, 은행은 만기일에 고객이 지정한 고객명의를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한다.
- ⑥ 고객이 자동할인하기로 약정한 경우, 은행은 할인신청에 관계없이 지정한 날에 할인이자와 승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고객 명의의 계좌에 자동 입금한다.

제 9 조 결제일 연장

- ① 고객이 결제일 연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매기업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거래승인 건별로 은행에 결제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치 또는 할부로 결제하기로 거래승인한 경우에는 결제일을 연장할 수 없다.
- ② 결제일 연장의 경우에는 만기일의 CD 금리에 결제일연장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실제 적용금리는 <별표> 판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결제일연장이자 = 결제일연장금액×(만기일 CD 금리+결제일연장가산금리)×신용공여일수 ÷ 365

(신용공여기간은 만기일로부터 연장된 결제일 전일까지의 일수)

- ③ 결제일 연장이자는 연장결제일에 판매론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하며, 고객이 거치결제 또는 할부결제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 결제일연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약정조건을 결제일 연장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결제일 연장조건으로 약정이 변경되더라도 이전에 거치 및 할부결제 방식으로 승인된 거래승인분은 당초 조건대로 결제처리된다.

제 10 조 판매론 상환

- ① 구매기업은 고객의 판매론 상환을 위하여 은행에 구매기업 명의의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하여야 하며, 판매론은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기업은 대금결제일 이전이라도 은행에 고객의 판매론을 상환할 수 있기로 하되, 이로 인한 **수수료나 이자는 반환받지 않는다.**
- ② 구매기업은 판매론 거래승인 후에 물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고객과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이미 고객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고객에게 입금한 경우에는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판매론을 상환하기로 한다.
- ③ 구매기업이 대금결제일에 판매론을 상환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때에는 발생일부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연체발생일로부터 2 개월까지

$$\text{연체이자} = \text{연체원금} \times (\text{만기일의 CD 금리} + \text{가산금리}) \times \text{연체일수} \div 365$$

(가산금리는 결제방식(거치/할부/결제일연장)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가산금리를 의미한다)

2. 연체발생일로부터 2 개월 이후

$$\text{연체이자} = \text{연체원금} \times (\text{만기일의 CD 금리} + \text{가산금리} + \text{연체가산금리}) \times \text{연체발생일로부터 2 개월 경과후 연체일수} \div 365$$

(가산금리는 결제방식(거치/할부/결제일연장)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가산금리를 의미한다)

- ④ 거치이자는 만기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1 회차 이자를, 이후 매월의 결제일에 소정의 이자를 청구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는 월의 결제일에 원금과 최종회차의 이자를 청구한다.
- ⑤ 고객이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거래승인분의 해당 만기일에 고객에게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당일중에 구매기업의 결제계좌에서 출금함으로써 판매론을 상환받기로 한다. 단, 구매기업 결제계좌의 자금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판매론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결제분에 대해 제 3 항에서 언급된 산식에 따른 연체이자가 미결제일 당일부터 적용되며 은행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해당 미결제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 및 고객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 환매

- 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판매론을 결제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연체발생일로부터 2 개월 동안 환매 유예기간을 두어 구매기업으로 부터 일차적으로 상환을 받는다. 만약 환매유예기간동안 구매기업이 연체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고객에게 상환청구를 실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 및 고객에 대한 연체통지 및 연체 관리 방식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제 1 항에 의거, 고객이 판매론을 상환할 경우 고객은 제 10 조 제 3 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12 조 면책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3 조(손실부담 및 면책)를 적용하기로 한다.

- 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2.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의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 3.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
- 4.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사항

제 13 조 압류, 가압류 지급제한 사유 발생시 처리

- ① 고객과 구매기업은 은행이 거래승인한 고객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 3 채권자 등이 이를 압류, 가압류하거나 고객이 제 3 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이미 거래승인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이를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제 1 항의 사유 발생시에는 은행에 판매론 거래승인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 1 항의 소정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기거래승인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객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고객에게 입금한 경우, 또는 거래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판매론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은행에 그 해소 사실 및 판매론 거래승인에 관한 판매대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과 은행은 그 시점부터 이 약정에 의한 업무를 재개한다.

제 14 조 효력 및 약정 기간 등

- ① 이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 약정은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전까지 고객과 은행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

- ③ 이 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은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고객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과 다를 경우,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이 약정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 별 표 > 판매론 신청서

(해당 항목의 '□' 에 '√' 표시하고 약정내용을 기입)

약정 한도	(금)원 (₩)원	약정만료일	년 월 일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CD 금리(제 2 조 용어의 정의 참조)		
거치/할부	<input type="checkbox"/> 이용안함 <input type="checkbox"/> 할부이용 <input type="checkbox"/> 거치이용	거치/할부 가산금리	()%
결제일연장	<input type="checkbox"/> 이용 안함 <input type="checkbox"/> 30 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60 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90 일 이내	결제일연장 가산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만기일의 CD 금리+가산금리+연체가산금리 (가산금리는 결제방식(거치/할부/결제일연장)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가산금리를 의미한다)		
할인 방법	<input type="checkbox"/> 판매기업 임의신청 <input type="checkbox"/> 자동할인 * 할인일: 승인일+()일 (자동할인을 선택한 경우, 할인일은 1 일 ~ 10 일 중에서 선택하여 기입)		
할인가산금리	<input type="checkbox"/> 단일 할인가산금리		()%
	<input type="checkbox"/> 할인가간별 할인가산금리	1 -30 일	()%
		31-60 일	()%
		61-90 일	()%
		91 일 이상	()%
승인수수료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판매기업 <input type="checkbox"/> 구매기업 <input type="checkbox"/> 양 당사자		
	<input type="checkbox"/> 정액제	승인건당 ()원	
	<input type="checkbox"/> 정률제	승인금액의 ()%	